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보도 참고자료

보도

2018. 1. 12.(금) 조간

배포

2018. 1. 10.(수)

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김성균 팀장(3145-5702), 이지영 선임(3145-5696)
	은행감독국	곽범준 팀장(3145-8030), 이희중 선임(3145-8025)
	서민중소기업지원실	정미선 팀장(3145-8412), 김동하 수석(3145-8405)
	상호여전감독국	이현석 팀장(3145-7440), 남영민 선임(3145-7556)
	신용정보실	구원호 팀장(3145-7830), 신경섭 선임(3145-7832)
	보험감독국	양진태 팀장(3145-7471), 박광식 조사역(3145-7474)

### 제목 : 금융꿀팁 200선 - ⑦8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78번째 금융꿀팁으로,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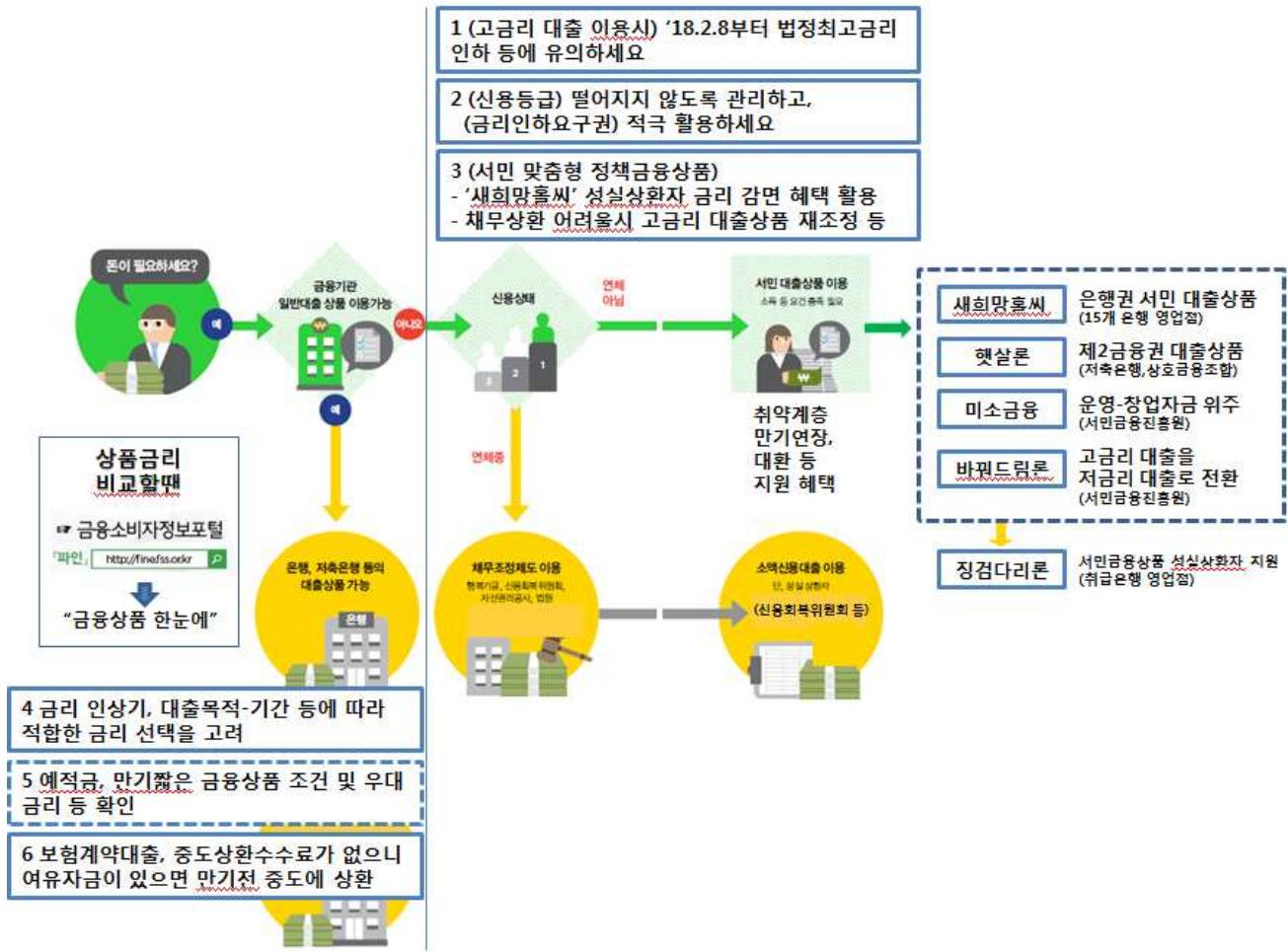
<별첨> 금융꿀팁 200선 - ⑦8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 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 (<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제 목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

 금리 인상기, 금융상품 이용시 다음 사항을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

- ① 고금리 대출 이용시, '18.2.8부터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에 유의
  - ② 신용등급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적극 활용
  - ③ '새희망홀씨' 대출은 성실상환자 금리 감면 혜택 활용
  - ④ 금리인상기, 대출목적·기간 등에 따라 적합한 금리 선택을 고려
  - ⑤ 예·적금,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 조건 및 우대금리 등 확인
  - ⑥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만기전  
중도에 상환

## ① 고금리 대출 이용시, '18.2.8부터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에 유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18.2.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年 24%**로 3.9%p 인하됩니다. 금번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 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2.7일 이전까지 고금리(연24% 이상) 대출 이용자는 기존 대출 갱신 등의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장기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최고금리 인하시기('18.2.8)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18.2.8일 이후에는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이 재계약·대환·만기연장\* 등을 할 때 새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장은 기존 계약 만기 도래 후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시 이를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대부업자가 수취하는 영업상 관행

특히 이미 장기(3~5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를 **서민금융진흥원(☎1397)**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고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대부업 또는 여전사의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다중 채무자의 경우 **고금리 대출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상환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리볼빙 결제**(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방식)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채무원리금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고율의 수수료(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지금 여유가 있다면 일부라도 결제하여 **리볼빙 이용잔액**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② 신용등급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적극 활용

### 1) 신용등급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세요

신용등급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이용하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현금서비스를 습관적으로 이용하면 조기상환을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과거 데이터 통계분석 결과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연체율이 미이용자의 연체율보다 높음

특히, 대출금 등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치명적입니다. 대출금, 신용 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금리인상에 따라 원리금상환액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 및 신용 카드 사용 등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상환**하여야 하고, 다수의 연체건이 발생한 경우 연체금액이 큰 대출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합니다.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등급** 및 부채상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CB社 사이트에서 4개월에 한 번씩 신용등급 무료확인 가능

(파인(fine.fss.or.kr) 「신용정보조회」 –NICE 「나이스지키미」 <https://www.credit.co.kr>, KCB 「올크레딧」 <http://www.allcredit.co.kr>,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http://www.credit4u.or.kr>)

### 2)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하세요

은행 및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대출이용 기간 중 **대출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 2016년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는 은행 약 11만건 및 제2금융권 6만3,000건 수준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 변동,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신용 등급 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 및 2금융권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카드론' 등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활용하여 저신용·고금리 차주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에 모두 적용되나, 햅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별 자율시행 중인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조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례 1)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최○○씨는 최근 셋째 자녀 출산 이후 부모님을 모시고 살 집을 장만하여 이사할 예정임. 기존 새희망홀씨 대출을 10백만원, 금리 7.6%로 이용(이중 7백만원을 상환)중에 추가로 세 자녀의 양육비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이사비용으로 5백만원이 필요하지만, 최근 금리인상 소식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까 고민임

### ③ '새희망홀씨' 대출은 성실상환자 금리 감면 혜택 활용

가계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거나 고금리의 제2금융권 고위험대출을 보유한 취약차주인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난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 등에 따른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나 서민금융정책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창업운영자금·저금리 전환 등 지원(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특히 은행권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경우, 일정기간 (예: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분은 대출기간 중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p 이내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등

## 새희망홀씨 성실상환자 금리감면 혜택?

※ 은행에서는 새희망홀씨 대출 원리금 연체가 없거나 연체일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성실상환자'로 선정하여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내용이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니 상세내용은 거래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실상환자의 경우 **긴급생계자금**(5백만원 범위)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도 있고, 이와 별도로 **은행권 대출상품인 징검다리론\*** 이용도 가능합니다.

\* 저신용자의 은행권 대출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민금융상품을 전액상환 또는 2년이상 성실 상환(연체없이 대출금 75% 이상)한 경우, 최대 3천만원 이내 연 9.0% 이내 금리로 대출

한편,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신용평점상 가점\***(5~1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회사(CB사) 1~1000점 기준(1~10등급) 기준, 단, 신용등급 1~6등급, 현재 연체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다중채무자(2개 이상 금융사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 제한 가능

새희망홀씨의 구체적인 이용조건 및 혜택은 **전국 15개 은행**(산업·수출입·인터넷전문은행 제외)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한편, 여러 금융기관들이 취급하는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서민금융 1332**」(<http://www.fss.or.kr/s133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례 2)** 직장인 이△△씨(36세)는 1년전 주거래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이 걱정됨. 이때 주변에서 금리인상기에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고정금리가 정말 유리한 것인지, 대출을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 등이 궁금함.

### ④ 금리인상기, 대출목적 · 기간 등에 따라 적합한 금리 선택을 고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①적격대출 ②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인 대출 ③고정금리 적용기간 5년 이상인 혼합금리대출 등

다만, 금리상승기라 하더라도 대출기간 및 자금사용목적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금리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품별.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략 1%p 정도 높으므로, 금리인상기라 해도 금리인상 폭과 주기, 대출기간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통상 3년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이 유리하다는 것은 3년동안 0.25%p씩 7~8차례 이상 인상된다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

또한 가산금리가 같다면 금리 인상기에는 신규COFIX\*연동 대출상품 보다 **잔액COFIX\*연동 대출상품이 유리합니다.**

\*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 COFIX(Cost of funds inde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는 대출

한편,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았다면, 금리인상 폭과 금리변경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사례 3) 직장인 김OO씨(43세)는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금융 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금리가 높은 예.적금 상품들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한번 가입후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더 높은 금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 가입을 주저함.

## ⑤ 예·적금,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 조건 및 우대금리 등 확인

일반적으로 예.적금은 가입시의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며,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에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를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은행들은 이를 고려하여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회전식 정기예금의 경우 최초 가입금리가 통상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아닌 한 오히려 이득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예금만기 이내에서 회전주기(1,3,6,12개월 등 이자율이 변동 적용되는 기간) 단위로 예금금리가 시중금리에 따라 바뀌는 예금

예·적금 상품을 가장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금융상품 한눈에」**(<http://finlife.fss.or.kr>)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먼저 「금융상품한눈에」서 은행별 주요 예·적금 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쉽게 확인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예·적금 2~3개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개인별 거래실적·특정조건 가입 등을 전제로 한 우대금리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우대금리 등 구체적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례 4) 급하게 자금 300만원이 필요했던 박◇◇씨(50세)는 대출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어 20여년전 가입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았으나, 알고 보니 확정 고금리 상품이어서 대출 금리도 매우 높아 실제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느껴짐.

#### ⑥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만기 전 중도에 상환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같은 조건의 **보험 가입이 쉽지 않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사용할 자금이 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 ~ 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로,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등에 유용**합니다.

한편, **보험계약 대출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확정 고금리 상품의 경우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매우 높아 보험계약 대출금리가 8% ~ 9%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 가입한 상품별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보험계약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리와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금리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출 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만기 전에 중도상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